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0.

발 의 자:홍기원·송옥주·모경종

문진석 • 최민희 • 윤준병

서영석 • 이병진 • 전혐희

박희승 • 윤후덕 • 신영대

김 윤 • 민홍철 • 이성윤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런데 이 법의 제명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로 되어 있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, 나아가 공연히 이 법이 기 업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의 본래 규정 취지에 맞도록 법 제명을 「중대재해 예방법」으로 변경하고, 이에 맞추어 제1조 목적 규정도 일부 수정하고자함(안 제명 및 제1조).

법률 제 호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을 "중대재해 예방법"으로 한다.
제1조 중 "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"을 "취급하는"으로, "법인의 처벌"을 "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 ·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3호아목 중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을 "중대재해 예방법"으로 한다.

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8호 중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을 "중대재

- 해 예방법"으로 한다.
- ③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"을 각각 "중대재해 예방법"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	중대재해 예방법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	제1조(목적)		
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			
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			
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<u>취급</u>	<u>취급</u>		
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	하는		
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			
<u>한</u>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			
및 <u>법인의 처벌</u> 등을 규정함으	<u>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</u>		
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	영·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		
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	장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안전		
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	·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사항-		